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04
----------	------

2022년 6월 1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2년 5월 27일
다. 상정일자: 제30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 유연식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기존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친환경 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 신청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마일리지 통합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타: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대상선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관리·감독 등 절차는 조례 개정 후 세부사업 진행 시 처리 지침 및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사항
 - 관련부서 의견조회('22.3.21.~'22.4.11.)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신설하며, 이의 적용대상, 참여 신청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있음.
- 조례 명칭 변경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친환경 마일리지로 정의하고 동시에 안 제1조(목적)와 제3조(기본 책무) 등에서 ‘에너지절약’ 문구를 ‘친환경 생활 실천’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문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조(정의)는 제4항에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 마일리지’를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총칭으로 정의하는 것임.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더 높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회원(1,000가구)을 모집하여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며, 향후 재활용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친환경 행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기존 마일리지제도의 초점이 건물 에너지, 자동차 이용량 감축 등 시민들의 정량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정성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안 제2조(정의)>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u><신 설></u> 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2. ----- -----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친환경 마일리지제도의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 신청에 대한 조문 정비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향후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0조는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 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 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각각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 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조)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지식보급”을 “자발적 실천 문화확산”으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u>에너지절약</u>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u>에코마일리지</u>와 <u>승용차마일리지</u>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u>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u>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u>친환경 생활 실천</u>----- ----- <u>친환경 마일리지</u> ----- ----- -----.</p> <p>제2조(정의) ----- -----.</p> <p>1. “<u>친환경 마일리지</u>”란 <u>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u>를 포함한 <u>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u>을 말한다.</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 ----- <u>줄인</u> ----- ----- -----.</p>

<신 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자치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적용대상) ①·② (생략)

<신 설>

제5조(참여신청) ①·② (생략)

<신 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

친환경 생활 실천-----

----- 친환경 마일리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친환경 마일리지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참여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 및 직권 탈퇴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참여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가입, 마일리지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다.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

<신 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
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
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
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
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
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
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① -----
----- 친환경 마일리지 -----

-----.

② ----- 친환경 마일리지 -----

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 친환경
마일리지-----

- 자발적 실천문화확산-----
-----.